수용시설 아동학대 과거청산에 대한 세계적 흐름 : 호주 사례를 중심으로

주윤정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이사랑 | 재단법인 진실의 힘

"타자가 혼자 죽어가지 않도록 타자를 위로한다"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자들의 공동체> 알폰소 링기스



1. 연구목적
 2. 세계적 흐름
 3. 호주의 사례
 4. 한국에의 함의



- 아동학대와 아동대상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점 필요
- 대다수 피해생존자가 아동청소년기 폭력을 경험
-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그람시, 1999: 359p

은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전적으로 제거되거나 했다."

인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허약하거나 순응하지 않는 자들은 부랑계급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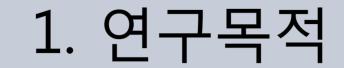
이제,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는 이들과의 공동체(링기스, 2013)'에 대한 고민이 필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존재 양식과 생활양식의 모든 변화는 잔인한 강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통제와 폭력

근대 국가 | 하나의 질서와 공통성 중심으로 인민 통합



1. 연구목적

전세계적으로 아동,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에 대한 과거의 폭력과 이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구현이, 이행기 정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u>발표에서는 **시설수용 아 동학대에 대한 아일랜드와 호주의 진상규명과 회복적 정의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진상규명과 화해를 넘어 **피해자 중심적인 진상규명,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 변형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의 구현</u>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 이런 <u>세계적 흐름들이 한국의 2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에 어떤 함의</u>를 갖는지 살펴보고 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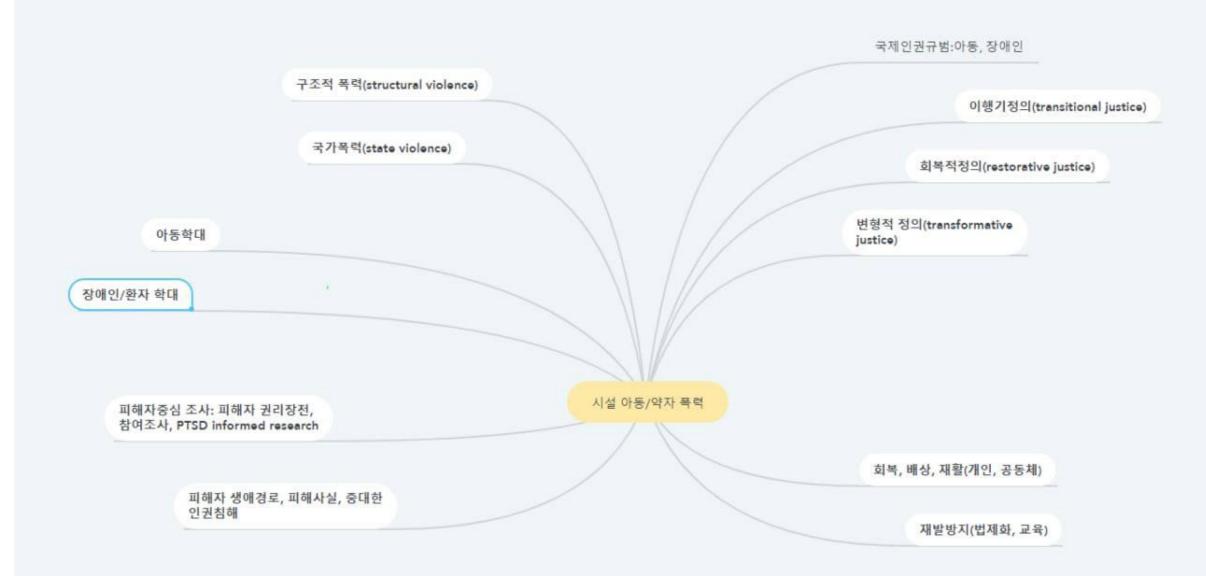
황제함에 수용의로 된 재건당 둘미니들



<image><image>



이행기 정의의 이행 : 단 하나의 양보 없이 모든 권리가 이행 되어야 함



2. 세계적 흐름

1) 인권 의식의 형성과 새로운 문제의 가시화

∨ 가톨릭 신부 성추문 → 시설 내의 문제로 확장

v 각 사회의 권위주의 청산

V 피해자 운동

2) 트라우마 등 심리학적 연구와 라이프 코스

3) 정의의 언어의 확장

4) 국가별 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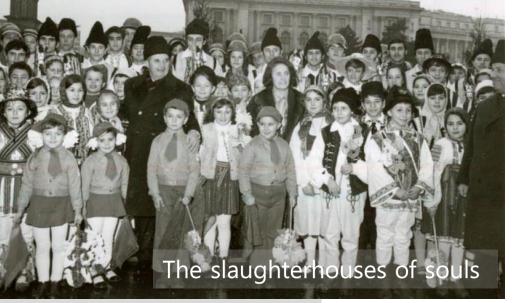


THE HOLOCAUST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홀로코스트와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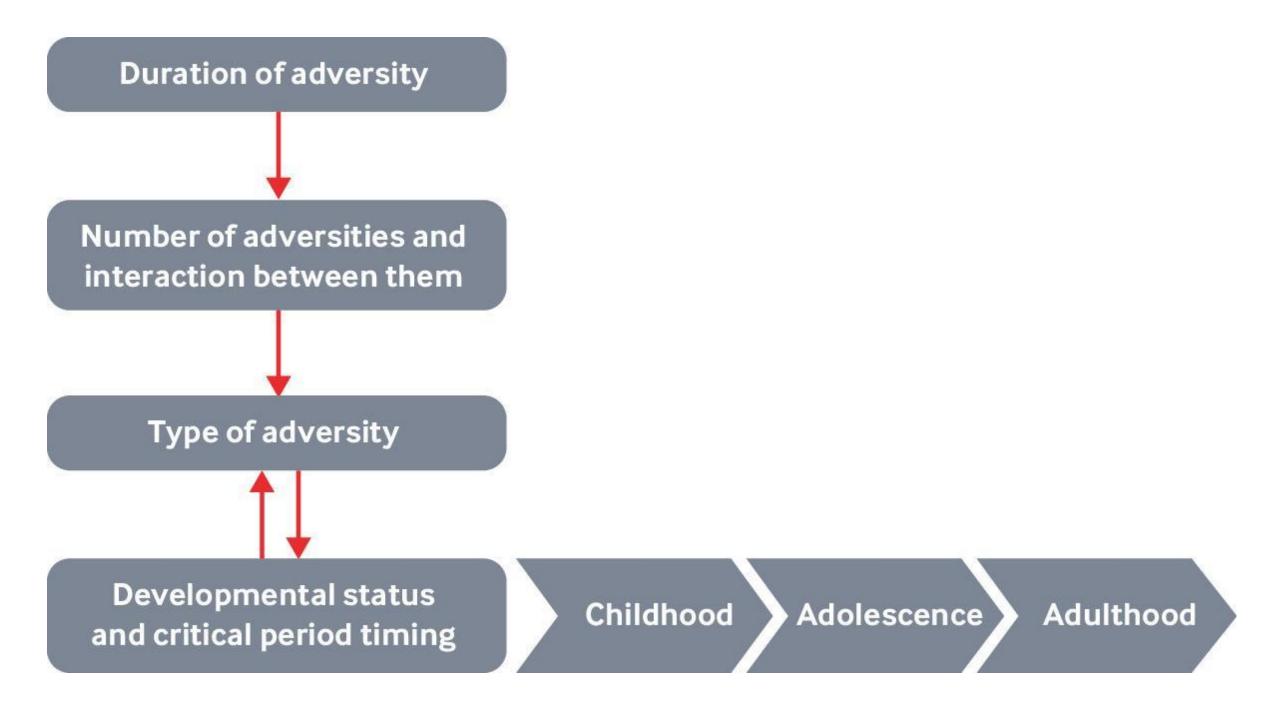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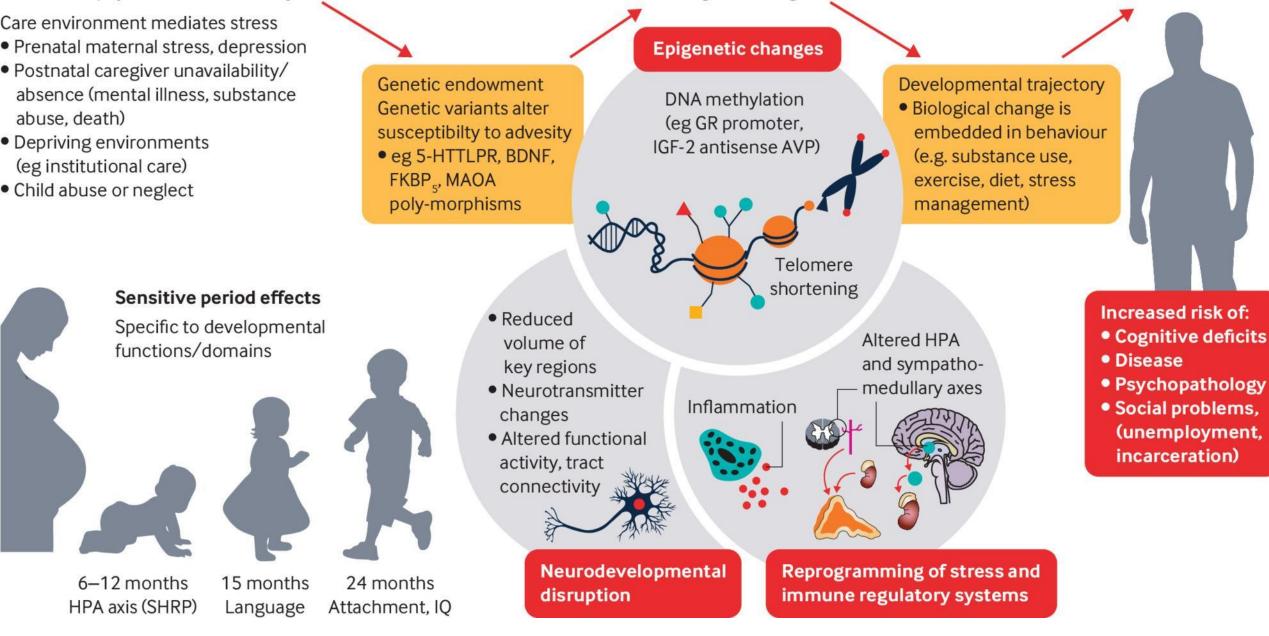




아동기 폭력 / 트라우마와 라이프코스







https://www.bmj.com/content/371/bmj.m3048

기관명	활동기간	관할	조사범위	수용시설 종류	예산
Commission to Inquire into Child Abuse (The Ryan Commission)	00-09	아일랜드	모든 폭력, 방임	거주, 돌봄 시설 Institutional residential c are settings 아동학대, 미혼모, 직업학교, 보육시설	1억 유로 약 1,340억원
Country Commission into Abuse and Neglect in Residential Homes in Bergen	01-03	베르겐, 노르웨이	-모든 폭력, 방임 2차세계대전시기 독일군 자녀, 소수민족 -지자체의 조사가 활성화되어 있 음	거주, 돌봄 시설	
Swedish Commission to Inquire into Child Abuse and Neglect in Institutions and Foster Homes	06-11	스웨덴	모든 폭력, 방임	거주, 돌봄 시설	
Godhavn Inquiry	10-11	덴마크	모든 폭력, 의학실험	거주, 돌봄시설	
Historical Institutional Abuse Inquiry	14-17	북부 아일랜드	모든 폭력, 방임	학교를 제외한 거주, 돌봄 시설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	13-17	호주	아동성폭력, 관련한 문제 성폭력의 범위를 광의로 해석	모든 시설 *조사대상 기간 범위(호주 국가설립이후 -2018)	5억 호주달러 약 4,260억원
Scottish Child Abuse Inquiry	15-	스코틀랜드	물리적, 성적 폭력, 관련된 심리 적, 감정적 학대	위탁기관, 학교, 구금시설 포함한 거주, 공동생활 수용 시설	3,500만 파운드 약 531억원
Independent Jersey Care Inquiry	13-17	저지시, 영국	모든 폭력, 방임	위탁기관 포함한 거주시설	
Independent Inquiry into Child Sexual Abuse	15-	잉글랜드, 웨일즈	성폭력	모든시설	매년 2천만 파운드 약 303억원

Apologies and the Legacy of Abuse of Children in 'Care'

International Perspectives

^{Edited by} Johanna Sköld and Shurlee Swain Introduction Johanna Sköld and Shurlee Swain

Part I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Legacy of Child Welfare

<u>1. Apology Politics: Transnational Features</u> Johanna Sköld

<u>2</u> Contested Memories: Caring about the Past – or Past Caring? Jacqueline Z. Wilson and Frank Golding

<u>3 Children's Agency: The Struggles of the Powerless</u> *Kjersti Ericsson*

<u>4</u> Trials and Contestations: Ireland's Ryan Commission Carol Brennan

5 Contextualizing Reparations Politics Malin Arvidsson

<u>6 Why Sexual Abuse? Why Now?</u> Shurlee Swain

Part II National Particularities

<u>7 Denmark: The Godhavn Inquiry</u> Maria Rytter and Jacob Knage Rasmussen

<u>8 Sexual Abuse in Dutch Child Protection, 1945–2010</u> Jeroen J.H. Dekker and Hans Grietens

<u>9 The Politics of Apology: The Norwegian Case</u> Eva Simonsen and Karen-Sofie Pettersen

10 Scotland: Historic Abuse in Care and Human Rights Andrew Kendrick, Moyra Hawthorn, Samina Karim and Julie Shaw

<u>11</u> Canadian Inquiries Stumble Towards Redress Gerald Cradock

Part III Challenges for Professionals

<u>12 The Role and Importance of History</u> Nell Musgrove

<u>13 Truth-Seeking in Oral Testimonies and Archives</u> Johanna Sköld and Åsa Jensen

<u>14</u> Dilemmas of Care: Social Work and Historic Abuse Andrew Kendrick and Moyra Hawthorn

15 Transitional Justice Workers and Vicarious Trauma

설립배경

 호주 전역에서 종교 시설, 학교 등 시설의 성격과 관계 없이 시설 아동 성폭력 사건이 전세대에 걸쳐 발생
 의회, 인권위원회(전신), 각 주립 위원회 조사 진행
 가톨릭 교구 내 아동 성폭력 사건

∨ Julia Guillard 총리의 '왕립 위원회' 설치 권고 | 2012.11.

최근 알려진 아동 성폭력 혐의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는 어떤 어린 이도 겪어서는 안될 간교하고 사악한 행위입니다. 이에 관여한 모든 이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장 철저한 조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들의 목 소리가 들릴 권리, 그들의 주장하는 바가 조사될 권리를 가집니다. 저는 왕립위원회야말로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 선을 다해야 합니다. (...) 호주는 반드시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시설 내에 숨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을 함께 찾아내는 미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 소개

The Hon. Justice Peter McClellan AM | NSW 상소법원 판사 The Hon. Justice Jennifer Coate | 가정법원 판사 Mr. Bob Atkinson AO APM | 전 경찰청장 Mr. Robert Fitzgerald AM | 정부 생산성위원회 위원장 Professor Helen Milroy | 아동 청소년 전문 정신과 의사 Mr. Andrew Murray | 전직 서호주 상원의원.

규모 매년 평균 300여명 5년간 총 700명 근무

예산 5년간 약 352.3백만 호주달러 약 3,000억원

조사 권한 Terms of Reference 일반적 혹은 특정한 경우,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불법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넓게 포함함. '폭력'에 대한 포괄적 해석 가능

Institutional responses to allegations and incidents of child sexual abuse and related matter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 의 혐의 및 사건에 대한 시설 대응.

- 시설 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항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 시설 내 아동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의 혐의, 사건 및 위험성에 대한 정보나 보고를 격려하거나 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 아동 성폭력 혐의 및 사건 보고, 조사 및 대응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 의 과제
- 시설 내 아동 성폭력 및 관련된 문제가 과거 미쳤거나 혹은 미래에 작용할 효과를 주장하거나 혹은 완화 하기 위한 시설과 정부의 과제; 시설의 배보상 제공, 수사/기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건 이관 등 포 함

주요 고려사항

- 관련된 이들의 증언 수집의 중요성, 동시에 경험자의 트라우마, 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인식
- 개별사건 조사 중요시 하되, 사건 이관의 가능성, 제도적 문제 조사와 권고의 필요성 인식
- 시설 관계자의 타당하고 적절한 반응 도모
- 입법, 정책, 시스템 변화를 위한 완결성 있는 권고

진실규명 조사 방법

개별조사

- 8,013여 건의 개별조사, 6,876명의 생존자 증언
- 적어도 1명의 위원 참여
- Trauma-informed approach
- 개별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등

서명 참여

■ 992건 접수





■ 57건의 공청회, 67건의 비공개 공청회 (총 444일)

■ 총 1,320명 피해자 증언, 134개 시설 증언

위원회 조사 결과

66 중간 보고서

-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 2015.8.
- 배보상과 민사소송 National Redress Scheme | 20187.
- 형법상 정의 구현 | 2017.8.

최종 보고서

- 2017.12.15. 제출
- 17권의 보고서, 409개의 권고

국가 사과

- 2018.10.22. 호주 수상 Scott Morrisson
- 피해자, 생존자를 위한 국가의 공식 사과

17권 | 위원회 너머; 위원회의 영향과 유산, 위원회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6개 권고).

- 16권 | 종교 기관 (58개 권고)
- 15권 | 현재 구금 시설 환경 (15개 권고)
- 14권 | 체육, 레저, 예술, 문화, 공동체, 취미 그룹 (4개 권고)
- 12권 | 현재의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 (22개 권고) 13권 | 학교 (8개 권고)
- <특정 시설> 11권 | 역사적인 생활 시설(residential institution); 1990년이전의 거주시설 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생존자 경험과 시설 대응

<지원과 치료(treatment)> 9권 | 애드보커시, 지원 및 치료 서비스(9개 권고). 10권 | 유해한 성적 행동을 하는 아동에 대한 시설 대응 검토(7개 권고).

<아동 보호 시설> 6권 | 아동이 안전한 시설을 만드는 법: 국가적 아동 성폭력 예방 정책의 필요성, 아동 안전 기준 및 이행방법 제안. (24개 권고) 7권 | 시설 대응 및 보고 방식 개선: 아동 성폭력 관련 항의 및 소송, 정부 외 기관으로 사건 보고 하는 방법(12개 권고). 8권 | 기록 보존과 정보 공유: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기록 확보 및 보존, 정보 공유 검토(23개 권고).

- 4권 | 아동 성폭력 확인과 폭록: 생존자들의 경험으로부터 위원회가 배운 것 5권 | 개별 조사에서 피해자가 위원에게 증언한 아동 성폭력
- 2년 | 경양·시골 네 아중 경숙력이 경순사, 가숙, 신구, 중중세 신세에 비신 영
- 3권 | 영향: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이 생존자, 가족, 친구, 공동체 전체에 미친 영향
- 2권|원인과 성격: 시설 내 아동 성폭력 원인과 성격(권고 1개).
- <시설 내 아동 성폭력 이해>

1권 | 최종 보고서 요약,409개 권고 전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최종 정보 통계. 최종보고서 소개하고 위원회의 설립, 범위, 작용 설명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기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동 피해자, 생존자들이 겪는 극심 하고 계속되는 고통과 괴로움, 트라우마에 대한 사과를 드립니다.** 어린이로서 당신은 돌봄과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돌봄에 책임 있는 바로 그 사람과 기관이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물리적, 정신적 학대에 괴로워했고, 끔찍한 성범죄를 겪어냈습니다. (...) 모든 호주 어린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 는 이 사과의 의미를 진실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받아들이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어린이들을 보호하

위원회 조사 결과

66

3. 호주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시설 대응 조사를 위한 왕립 위원회'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

시설 내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겪은 과거의 피해 사실, 그리고 현재의 피해, 미래 발생가능한 소개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회복/배보상(redress)를 피해자, 가족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을 겪은 이의 신청을 기본으로 함
- 정부 공무원이 피해자 신청 과정과 Redress scheme 담당
- Redress 자체 지원 서비스 무상 지원 가능
- 책임 있는 시설 및 지자체 가입

APPLICATIONS RECEIVED 9,506 DECISIONS MADE 5,723 OUTCOMES ISSUED 5,178 APPLICATIONS FINALISED 4,888 FINALISED PAYMENTS 4,842 OFFERS MADE AWAITING APPLICATIONS DECISION 568 APPLICATIONS BEING PROCESSED 3,511 현황 ■ 총 9,506건 신청, 이중 4,842건에 대한 재정 지원금 지급 완료 ■ 2021.2.12. 현재 총 404.4백만 호주달러(약 3,500억 6천만원) 지원 62,500개 장소에서 학교, 교회, 자선단체 등 450개 시설이 가입

APPLICATIONS ON HOLD

Application progress as at 12 February 2021

771

3. 호

Redress 원칙

- Survivor-focused approach
- No Wrong Door Policy
- 시설 내 아동 성폭력의 본질 및 효력과 피해자에 대한 문화적 요구사항에 맞춰 합당하게 제안, 평가 및 제공되어야 함
- 가장 약하고 힘 없는 피해자의 필요를 기준으로 함

3. 호주 'National Redress Scheme'

Redress 내용

직접적·개별적 응답

- 시설 관계자의 개별 사과
- 시설이 피해자 사건, 사건이 미친 영향을 인지
 한다는 사실 확인
- 재발방지 위한 이행 사항과 향후 계획 포함

상담 및 심리적 돌봄

- 피해자 생애 전반에 걸쳐 신청인 요구나 필요에 따른 상담과 심리적 돌봄 제공
- 복합 트라우마 전문가 진행. 피해자 가족 참여 가능

금전적 지원

■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

기준	수치	내용
폭력의 심각성	1~40	- 폭력의 내용(삽입 여부, 폭력 사용, 빈도수, 기간, 가해자와의 관계 밀접도) - 당시 아동의 나이 - 가해자 숫자 등
폭력의 효과	1~40	- 사건 이후 죄책감, 자존감 하락 등 피해자가 겪은 내면적 변화 - 타인과 관계 및 친밀도 형성의 어려움, 신뢰 구축의 어려움 - 우울증, 분노, PTSD 증상 등 - 기타: 시설 특이성(시설의 피해사실 인정 거부, 가해자 비호에 대한 증거 확보 등)
추가 요소	1~20	- 지자체 지원 여부 - 기타 폭력, 학대 사실의 여부 - 시설 폐쇄 - 관련해 발생한 장애 등

금전적 지원

■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	Scheme participant information			
	Assessment value	Proportion of participants	Cumulative proportion	Hypothetical payment level (\$)
■ 최소 1만 AUD (약 850만원)~최대 2((%)	(%)	
■ National Redress Scheme의 금전적 기	0–30	7	7	10,000
■ National Redress Scheme의 금선식 /	31–35	5	11	13,000
- 이거취 그게로 이쉬다 파세지다 미	36–40	6	17	18,000
완전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민/	41-45	9	27	23,000
	46–50	9	35	30,000
	51–55	9	45	39,000
	56-60	9	54	49,000
	61–65	9	63	63,000
	66–70	9	73	79,000
	71–75	10	83	100,000
	76–80	8	91	126,000
	81–85	6	96	159,000
	86+	4	100	200,000
	TOTAL / AVERAGE	100		65,000

금전적 지원

- 기준에 따라 피해 정도를 수치화
- 최소 1만 AUD (약 850만원)~최대 20만 AUD(약 1억 8천만원), 평균 6만 5천 AUD (약 5,500만원)
- National Redress Scheme의 금전적 지원은 피해자 고통에 100% 등가하는 배상이 아님
- 완전한 구제를 원하는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가능

- Redress schem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신청인이 기존에 혹은 별도로 받는 사회복지 등 지원서비스와 상충하지 않음
- 재원 마련: 책임 있는 시설, 시설 등이 다수 위치한 지자체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신탁 운영하며, 운영위원회 구성.
- 시설 내 아동 성폭력에 책임 있는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의 Redress scheme 가입 장려 e.g. 정부 지원금 제도 등

Redress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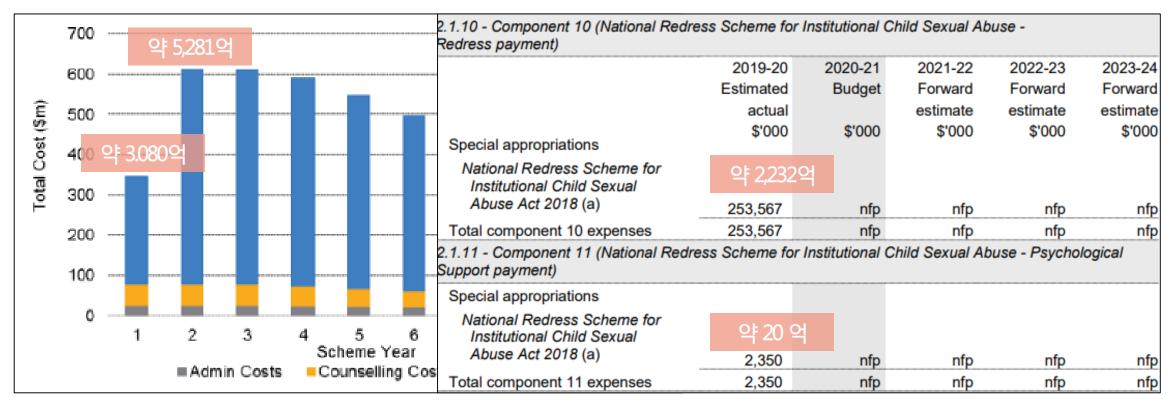
- 호주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한정
- 신청인에게 가해한 시설이 Redress Scheme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 접근성 높이기 위한 신청 지원 상시 운영 및 아동권 시민단체와 연계
- 신청 후 진행 속도

<u>12개월 내 지원: 46% 9개월 내 지원: 27% 6개월 내 지원: 10%</u>

■ 77%가 Redress 전체 지원, 54%가 상담 및 심리적 돌봄만 수용, 45%가 시설의 사과 요청

Redress 예산

■ 왕립위원회 예상 National Redress Scheme 매년 예산



■ National Redress Scheme 2019-20년도 실제 지출

4. 호주 사례의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개별 피해자 조사에 충실함

- 개별 피해사실 중심의 조사는 지원 및 재발방지 정책 마련에 단단한 기틀이 됨
- 개별적 사실을 밝혀내며 총체적 진실로 가는 방식은 사회전반적 변화를 이끄는 정책, 입법에 힘이 됨

4. 호주 사례의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개별 피해자 조사에 충실함
- 책임 있는 가해 시설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포함
- 가해자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방식
- 2기 진실화해위원회 주요 사건 e.g. 형제복지원 사건
 국가기관 외 원장의 가족, 관련 재단 등 가해자, 가해시설 존재
- 개별 사건의 특이성을 반영한 주요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필요

4. 호주 사례의 함의: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 사건의 종합적 진실과 함께 개별 피해자 조사에 충실함
- 책임 있는 가해 시설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포함
-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피해자 지원 및 구제 방안

- 금전적 손해배상만이 피해자 구제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음
- National Redress Scheme 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 운영
- 다른 지원제도와 충돌하지 않도록 함 → 피해자 개별 상황에 대한 섬세한 조사가 있었기에 가능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과제 복지원 사건의 핵심은 몇몇 관계인들의 부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제 정한 법에 의해 공권력을 부여받은 일이 없는 사설기관들이 어떻게 가난하 고 의탁할 곳이 없을망정 분명히 노예가 아닌 인간이고, 대한민국의 시민들 임에 틀림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정부기관의 비호와 지원속에서 짓밟아 왔으 며, 피수용자들의 죽음을 각오한 탈출의 시도가 있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민 들은 우리 사회 우리나라에 私益을 위해 이용되는 강제노동수용소가 존재함 을 알지도 못했느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관계된 특정인들을 지탄하는데 그** 칠 일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 모두가 다같이 뼈저린 수치심과 공포를 느끼며 반성할 일이다. 이인호, 조선일보, 1987/4/4/, 복지원 문제의 핵심

4. 호주 사례의 함의:

